#### 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1-46호

#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58호(2015.11.19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-89호(2019.06.13.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-200호(2019.12.2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가. 위 치 :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

나. 면 적: 11,188.1 m²

#### 2. 정비구역 지정 (변경없음)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	면적(m²)		비고
िस	성비사면 영경	T/1	기정	변경	변경후	1117
기정	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	문래동5가 22	11,188.1	_	11,188.1	

#### 3. 정비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 (변경없음)

	구분			면적(m²)		구성비(%)	비고
	TT		기정	변경	변경후	1784(%)	비걘
합계			11,188.1	_	11,188.1	100.0	
정비기반	소	계	700.0	_	700.0	6.3	
시설 등	공	원	700.0	_	700.0	6.3	소공원
	소 계		10,488.1	_	10,488.1	93.7	
택지 획 지 1			10,488.1	_	10,488.1	93.7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※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	구분		면적(m²)		구성비(%)	비고
	ነ ፈ	기정	변경	변경후	1.84(70)	H) TZ
공업 지역	계	11,188.1	_	11,188.1	100.0	
지역	지역 준공업지역		-	11,188.1	100.0	

※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- (1) 공원·녹지 등
- 가) 공원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	면적(m²)		최초	비고
12	기결정	기열의 세판	시 그 시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	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끄
기정	공원	소공원	문래동5가 22	700.0	-	700.0	서울시고시 제2015-358호 (2015.11.19.)	경계 조정

### 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기. 범	시설의	위치		면적(m²)		비고	
구분	종류	뀌시	기정	변경	변경후	미끄	
	작은도서관		295.00 m²	감) 124.84 m²	170.16 m²	지역주민	
	어린이집		210.00 m²	감) 11.74㎡	198.26 m²	시독구인 시설개방 (용적률산정	
주민공동	경로당		170.00 m²	감) 14.62㎡	155.38 m²	제외)	
시설 (커뮤니티 시설)	주민운동시설	문래동5가	500.00m²	감) 257.00㎡	243.00 m²	옥외시설	
127	어린이놀이터	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	300.00111	원) 237.00 III	243.00111	옥외시설	
	주민공동시설	0 11 11	1.111.16 m²	감) 85.63㎡	1.025.53 m²		
	소계		2,286.16 m²	감) 493.83 m²	1,792.33 m²		
관리사무소 및 경비실			112.79 m²	증) 89.02㎡	201.81 m²		
긘	근린생활시설		1,010.58 m²	중) 76.5㎡	1,087.08 m²		

# 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# 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 (변경없음)

결정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구분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ガハ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n177
기정	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	11,188.1	_	_	문래동5가 22	4	_	_	4	_	신축동 - 아파트:6동

# 2) 건축시설계획

7 H	구역·	구분		가구 획 <sup>ス</sup>	- 또는 구분	ما حا	Z-I Ó P	건폐율		률(%)	)	높이(m)	n) –		
구분	명칭	면?	적(m²)	명칭	면적(m²)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정비계획	예정 성	   법적   한	높이(m) /층수(층)	비고		
기정	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	11	,188.1	택지1	10,488.1	문래동5가 22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 이하	248.20% 이하	299	.99% ]하	71m이하/ 21층이하			
				•건립규모	고 및 비율			I.		ı		I	1		
					7	<sup>1</sup> 분	세대수(소형임	대)	비율(%)		Ë	미고			
					;	계	324(42)		100.0						
			기정		60 m	l <sup>²</sup> 이하	110(42)		34.0						
					60~85	ō m²이하	212		65.4						
							85㎡초과		2		0.6	0.6			
주택	규모 및 규모병 건설비율	皇			8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.0%이상 확보 립규모 및 비율										
				,		·분	세대수(소형임	대수(소형임대)			Ë	미고			
						계	324(40)		100.0						
			변경			i'이하	110(40)		34.0						
					60~85		212		65.4						
					85 m	i'초과	2		0.6						
				- 85 m²	이하 규모의	의 주택이 전	체 연면적에서	차지하는	- 비율 50.09	%이상	확보	_			
	심의완화 사항			• 예정법	적상한용적	률 : 299.99	%								
	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<ul><li>북측 /</li><li>남측 /</li><li>동측 등</li></ul>	선유로9길(1 선유로3길(1 변 : 3m	5m)변 : 5m .2m)변 : 5m .5m)변 : 3m 은 보도형 전									

# ■ 개발가능(상한) 용적률 산정

,	–				공공,	시설 제공	면적			
구분	정비구역	9	택지1		소계		정비기투	반시설 등		
면 적(m²)	11,188.1	L m²	10,488.1 m²	700.0 m²		700	).0 m²			
기준용적률	∘도시·주거환경정	d비기본계 <sup>호</sup>	<sup>[]</sup> 의 기준용적률 210%							
			구분		인센티브 (용적률)	적용내용	비고			
			우수디자인		15%	15%				
	장수명주택	•우수등급		17 516	10%	_				
		수등급	율등급 1+등급, 녹색건축인		9%이하	_				
	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	등급	율등급 1+등급, 녹색건축인		6%이하	6%				
	그	•에너지효 등급	율등급 1등급, 녹색건축인증	중 최우수	6%이하	_				
		•에너지효 급	율등급 1등급, 녹색건축인증	중 우수등	3%이하	_				
			지빌딩 1등급		15%이하	_				
-> 4 4 >-			지빌딩 2등급		14%이하	_				
허용용적률	제로에너지빌		지빌딩 3등급		13%이하	_				
	제도에디시컬 당		지빌딩 4등급		12%이하	_				
			지빌딩 5등급	. 1 . 1 . 2 . 2	11%이하	_				
		•제로에너지빌딩 1++등급, 에너지자립률 20%미만			10%이하	_				
		•1등급			15%	_				
	지능형 건축물	•2등급			12%	_				
	100 212	•3등급			9%	_				
		•4등급	F =		6%	_				
	역사문화보전		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/물길 년) 등(위원회에서 인정하는	-	5%이하	_				
			합계		20%이내	20%				
	·계획용적률 + = 210% + 20		. 제공되는 용적률 %							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유지		면적 - 새로 설치하는 기반	시설내 국	·공유지 면적	덕- 대지내	용도폐	지되는 국·공		
(七丁百)	$= 700.0 \mathrm{m}^2 -$	0 m <sup>2</sup> - 0 m <sup>2</sup>	= 700.0㎡ (공원)							
정비계획 용적률	∘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기준용적률 × 1.3α = 230% + 210% × 1.3 × 0.0667 = 248.20% *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= 700㎡ / 10,488.1㎡ = 0.0667									
	∘정비계획용적률 : 248.20% 이하									
법적 상한용적률	•예정법적상한용	-적률 = 29	99.99%(건축계획 용적률 29	99.99%)						
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

### 바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튄	<u>1</u>	내용	비고
환경보전		<ul> <li>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도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을 최소화</li> <li>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,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</li> <li>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</li> <li>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</li> </ul>	
	화재	<ul> <li>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</li> <li>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</li> </ul>	
	지진	<ul> <li>내진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강화</li> <li>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 및 대처요령, 대피소 위치 등 사전교육 의무화</li> </ul>	
재난방지	수해	<ul> <li>대상지는 안양천변에 위치한 양평1빗물처리장 유역에 해당하며, 침수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남</li> <li>금번 계획시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녹지율이 증가하여 우수유출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천수위 상승 및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</li> <li>또한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우·오수는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(200백만㎡/일)에서 처리되며,</li> <li>금번 계획시 세대수 증가로 인해 우·오수용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공사시 및 공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한 재해방지대책 수립</li> </ul>	

# 사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기정	주택재건축	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∘현황 : 160세대 ∘계획 : 324세대 증) 164세대	
변경	주택재건축	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∘현황 : 160세대 ∘계획 : 324세대 중) 164세대	

# 아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	가구	면적(m²)	획지		비고
		717	년석(m <i>)</i>	위치	면적(m²)	1177
	계				11,188.1	
기정	1	1	11 100 1	문래동5가 22	10,488.1	공동주택
1/3	2		11,188.1	문래동5가 22	700.0	소공원

### 자. 재건축 소형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건립위치	부지면적(m²)	동수	세대수	세대규모 (전용면적)	비고 (연면적)
기정	택지 1	10,488.1	_	42세대	44.99㎡ : 33세대 59.99㎡ : 9세대	2,004.09 m² 723.42 m²
변경	택지 1	10,488.1	_	40세대	44.99㎡ : 25세대 59.99㎡ : 15세대	1,511.23 m² 1,208.99 m²

# ■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

구분		내용	
기정	정비계획용적률 산정	•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를 소형주택 건설 (전용 60㎡)	
		예정법적상한용적률	299.99%이하
		정비계획용적률	248.20%이하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●(예정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 용적률) × 50% = (299.99 - 248.20) × 50% = 25.895% 이상	
	연면적 환산	• {(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) × 50%} × 대지면적 = {(299.99 - 248.20) × 50%} × 10,488.1㎡ = 2,715.89㎡ 이상	
	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	●연면적 : 2,727.51㎡ ●세대수 : 33세대 (전용44.99㎡, 공용 15.74㎡, 공급면적 60.73㎡) 9세대 (전용59.99㎡, 공용 20.39㎡, 공급면적 80.38㎡)	
변경	정비계획용적률 산정	•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를 소형주택 건설 (전용 60㎡)	
		예정법적상한용적률	299.99%이하
		정비계획용적률	248.20%이하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●(예정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 용적률) × 50% = (299.99 - 248.20) × 50% = 25.895% 이상	
	연면적 환산	● {(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) × 50%} × 대지면적 = {(299.99 - 248.20) × 50%} × 10,488.1㎡ = 2,715.89㎡ 이상	
	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	●연면적: 2,720.22㎡ ●세대수: 25세대 (전용44.99㎡, 공용 15.46㎡, 공급면적 60.45㎡) 15세대 (전용59.99㎡, 공용 20.61㎡, 공급면적 80.60㎡) <sup>주1)</sup>	

<sup>※</sup> 주1) 전용 및 공용, 공급면적은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, 건축계획 증의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#### 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○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

#### 5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 2133-7142)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(☎2670-3661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  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